

선거관리규정



2022. 1. 11.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한국대학교 노동조합 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 20 조, 제 22 조, 제 28 조, 제29 조, 제 37 조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각종 선거의 기준이 된다.

제4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본 조합 조합원으로서 규약 제 11 조의 의무를 다 한 자를 말한다.

(2)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의원은 조합 가입후 계속 만 1년 이상인 자.
2. 임원은 조합 가입후 계속 만 3년 이상인 자.

(3)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본 조합 규약 제 8 조, 제 55 조에 해당하는 자.
2.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에서 선출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 명
2. 선거관리부위원장 5 명 이내
3. 간사 1 명
4. 위원 10 명 이내

제7조(위원 등)

(1)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된다.

(2)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조합의 부위원장이 된다.

(3)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 유고시 정책기획국장이 대행한다.

(4) 위원은 각 부장이 되며, 단 위원의 추가가 필요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 (1)(2)(3)(4) 항의 위원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제한 등)

(1) 조합의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에 재 입후보하였을 경우 대의원대회 의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과 대의원대회 의장이 위원장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선거 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3) 위원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선거인 확정 통보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4. 입후보자 등록 접수
5.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확정
6. 입후보자 사퇴서 수리
7. 각종 선거일 확정, 공고
8. 투,개표에 관한 사항
9.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12조(선거구 배정) 대의원 선거구 배정은 각 직능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합원 30명당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직능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30명 이하라도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2. 조합원 20명 이하인 직능은 다른 직능과 합병하여 배정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거구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13조(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각 선거구별로 작성한다.

제14조(명부열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달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토록 한다.

제15조(후보등록)

(1)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대의원 후보 서식에 의하여 후보 등록 마감 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선거구 내에서만 출마할 수 있다.

(3) 대의원 후보 등록 기간 내에 후보 등록이 접수되지 않은 지구는 사고 지구로 간주한다.

제16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대의원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 전달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17조(공고) 대의원 선거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한다.

1. 대의원 후보 등록기간
2. 대의원 선거기간
3. 투표시기
4. 기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투표) 대의원 투표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1) 각 선거구 투표함에는 노동조합 직인과 각 후보의 기호 및 성명을 표기하여 봉인한다.
- (2) 투표용지는 조합서식에 의하되 후면에 조합 직인이 있어야 한다.
- (3) 각 후보의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 (4) 투표는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기표로 찬성일 경우 "0"표로 한다. 단, 당해 선거구의 대의원 정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수대로 기표한다.

제19조(개표) 개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이 되며 당해 선거구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2. "0"표 이외의 모든 기표는 무효 또는 기권으로 한다.
3. 기타 기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보궐선거) 대의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지구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1조(당선)

- (1) 대의원 선출시 단수 후보자의 경우 선거구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한 자를 당선자로 하며, 복수 후보자의 경우 다수의 찬성표를 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당선이 확정된 자에게는 조합서식에 의하여 당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장 선거

제22조(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 등록공고를 한다. 공고는 위원장선거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까지 한다.

1. 후보등록기간
2. 위원장 후보 등록자격
3. 등록 장소 및 절차
4. 정견발표일 및 투표시기
5. 기타 필요한 사정

제23조(위원장 후보 등록) 위원장에 임후보하는 자는 조합서식에 의하여 대의원 5인의 추천이나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 위원장 후보의 선거운동은 본 규정 제 16 조에 준용한다.

제25조(보궐선거) 위원장이 임기만료전에 사임 또는 불신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

일 이내에 제 22 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공고 한다.

제26조(정견발표)

(1)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견발표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위원장 입후보자에게 정견 발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견발표 시간은 1인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 후보가 원할 경우 1인 10분 이내의 온라인 정견발표 영상을 게시가능하며, 정견발표 대체도 가능하다. 정견발표 영상물의 공개기간은 정견발표일 부터 선거일 전날 까지로 한다.

제27조(투표용지 보관 등)

(1) 투표용지는 제 18 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투,개표 용지는 봉인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당선자)

(1) 위원장 선출은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2) 위원장 후보가 1인인 경우에도 전 항(1항)에 준하여 당선자로 확정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 다득점 상위 2인자가 2차 투표를 하여 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4) 추가 투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득점자가 나올때까지 결선투표를 실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 회계감사위원 선거

제29조(운영위원 정원) 운영위원 정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30조(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 선출은 위원장 또는 대의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1조(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는 위원장 또는 대의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2조(당선자 확정 공고) 제 21 조, 제 28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의하여 대의원, 운영위원 및 임원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총회(대의원회)종료 후 5일 이내에 당선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33조(준용) 이 규정의 미비점은 노동조합 관계법령 및 본 조합규약, 그리고 관례에 준 한다.

제34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35조(제정,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1991년 9월 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1995년 6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3년 5월 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5년 5월 2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6년 6월 2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 1조 조합 연맹 명칭 변경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 (2022.1.1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